

## 이달의 칼럼



이 창 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8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6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져서 경찰이 수사한 범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하게 되는데, 이런 송치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때에 보완수사를 과연 누가 하는 것인지가 혼란스럽다.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줄임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준칙에서는 송치사건에 대해 검사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하여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여기에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거듭 줄였으면서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뿐만 아니라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제4조 제1항) 송치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관련 범죄를 추가로 수사하는 경우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보완수사 요구결정을 하여 일단 사건을 종결하게 되고, 경찰은 송치한 사건을 다시 송부받아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바람에 수사가 너무 장기화되고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021년에 이렇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20만 건 정도나 된다.

그런데 지난해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규정들이 추가되었다. ① 검사는 사건송치요구(제197조의3 제6항), 사건송치명령(제198조의2 제2항),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고(제196조 제2항), ②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별개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제198조 제4항)는 것이다. 위 규정들은 특히, 검사의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송치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별개사건이 아니라면 검사가 송치사건의 직접 보완수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준칙에서는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형사소송법과 충돌을 빚게 되고, 실무에서는 검사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직접 보완수사 여부를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비판까지 있다.

보완수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를 끝마치고 사건을 송치한 경찰이 아니라 사건을 현재 가지고 있고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는 검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법을 조속히 정비하여 연이은 졸속입법으로 빚어진 규정과 실무의 혼란을 벗어나 활개 치는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수사시스템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법률신문)